

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발의일자 : 2020. 11. 13.
- 발 의 자 : 오세광 의원의 4명
- 검토일자 : 2020. 11. 18.

2. 근거법령

- 「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
- 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 제4조 ~ 제13조

3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구민 및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계획수립 과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제도,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등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